

수원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1. 審査經過

- 가. 제출일자 : 2009. 3. 2.
- 나. 제 출 자 : 박명자의원, 김효수의원
- 다. 회부일자 : 2009. 3. 6.
- 라. 상정일자 : 2009. 3. 13(2009. 3. 16)

2. 提案說明要旨(제안설명 : 박명자 의원)

가. 제안사유

- 「노인복지법」 제23조 및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적 부양부담 경감은 물론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관한 규정(안 제1조, 제2조)
-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안 제3조)
- 수원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내지 제9조)
- 노인 취업에 협력하는 기업 등에서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 규정(안 제10조)
- 노인을 대상으로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규정 (안 제12조)

3. 檢討報告要旨(검토보고 : 전문위원 김주호)

○ 본 조례안은

-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등 노인 취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노력을 강조하고 있음.

○ 조례안의 주요내용

- 본 안은 총 13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3조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내지 제9조에는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음.

○ 끝으로

- 노인들이 일자리를 갖는 것은 소득보장과 소외감 해소 등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과 더불어 사회적 부담 부담 경감에 이바지하고, 노인의 실질적인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조회에서 따로 붙인 자료와 같이 검토의견이 있으므로 여러 의견을 참고해서 심의 · 의결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審査結果

- 본 조례안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안 제5조 중 “심의”를 “협의”로 하며, 안 제6조 중 제2호 내지 제7호를 수정하여 안 제2호를 “수원 상공회의소 각 직능 단체 책임자”로 하고, 안 제3호를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하며, 안 제4호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임직원”으로 하고, “안 제6호”를 “안 제5호”로 하고, “안 제7호”를 “안 제6호”로 수정하며 기타 나머지는 박명자 의원님과 김효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함.

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u>심의</u> 한다. 1. ~ 7.(생략)	제5조(기능) ----- <u>협의</u> --. 1 ~ 7(현행과 같음)
제6조(구성)① ~ ②(생략) ③(생략) 1. (생략) 2. <u>대한노인회 수원시지구회 회원</u> 3. <u>수원상공회의소 각 직능 단체 실무 책임자</u> 4. <u>수원시 실버인력뱅크</u> 5. <u>수원시 시설관리공단</u> 6. (생략) 7. (생략)	제6조(구성)① ~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수원 상공회의소 각 직능 단체 책임자</u> 3. <u>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u> 4. <u>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단체·임직원</u> <u><삭 제></u>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